

임예진 관세법(2025년 대비) 정오

p.452 : 영 제185조 제1항

- ①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
- ②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

수정 전	수정 후
입회	참관

p.634, 635 : 영 제259조의7 제1항, 제4항, 제8항, 제9항 수정

제1항 심의사항

관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
-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
- ③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

제4항 민간위원의 임기

제3항 ②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, 제8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8항 위원회 해산

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제9항 세부사항 규정

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